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1380 제안년월일: 2023년 12월 21일

제 안 자: 운 영 위 원 장

1. 수정이유

○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체계를 반영하여 청구인명부를 구분하여 제 출토록 하고, 일부 경미한 오기 등을 수정하여 법령체계성을 확보하 려는 것임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체계를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오류 사항을 수정함(안 제7조제2항)
- 법령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수정함(안 제12조제4호)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
○ 기타사항 :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.

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2항 중 "청부인명부"를 "청구인명부"로, "읍·면·동"을 "자치구 동"으로 한다.

안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・홍보・지원 등 사무

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■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7호서식]

(청구인명부의 표지)

) 조례의 []제정 []개정 []폐지 청구

청구인명부

청구사유:

(

서 명 기 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(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)

○○시 ○○자치구 ○○동(총○○권 중 제○권)

서명 주민 수 : 명

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(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 서명부 활용요청 포함)합니다.

 청구인의 대표자
 (서명 또는 날인)

 대표자의 수임자
 (서명 또는 날인)

작성방법

- · "괄호()"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.
- · "청구사유"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.
- · 청구인명부는 시·군·자치구 또는 읍·면·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.
- ·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의	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의	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의
보장) ① 서울특별시의	보장 등) ① 서울특별	보장 등) ① (개정안과
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	시의회(이하 "의회"라	같음)
는 「주민조례발안에	한다)는 「주민조례발	
관한 법률」(이하"법	<u>안에 관한 법률」(이하</u>	
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	<u>"법"이라 한다) 제2조</u>	
른 청구권자(이하 "청	에 따른 청구권자(이하	
구권자"라 한다)가 조	"청구권자"라 한다)가	
례를 제정하거나 개정	조례를 제정하거나 개	
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	정 또는 폐지할 것을	
(이하 "주민조례청구	<u>청구(이하"주민조례청</u>	
"라 한다)할 수 있도록	<u>구"라 한다)할 수 있도</u>	
주민조례청구 절차에	록 주민조례청구의 요	
대한 홍보・교육 및 주	<u>건, 참여·서명방법 및</u>	
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	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	
대한 자문 등 필요한	교육과 주민청구조례안	
조치를 해야 한다.	의 작성에 대한 자문	
	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	
	<u>야 한다.</u>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조례의 제정・개정	제4조(조례의 제정・개정	제4조(조례의 제정・개정
•폐지 청구서 등) 법	• 폐지 청구서 등) <u>①</u> -	· 폐지 청구서 등) ①
제6조제1항에 따른 조		(개정안과 같음)
례의 제정・개정・폐지		
청구서(이하 "청구서"		
라 한다)와 대표자 증	<u>한다)</u>	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.		
<신 설>	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.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이내의 대표자(이하"선정대표자"라 한다)를 지정할수 있으며,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"의장"이라 한다)은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수	② (개정안과 같음)
< <u>신</u> 설> 제5조(대표자증명서 발급 등)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<u>서울특별시의</u>	있다. ③ 대표자가 제2항 후 단에 따른 선정대표자 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제5조(대표자증명서 발급 등) ①	③ (개정안과 같음) 제5조(대표자증명서 발급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회의장(이하 "의장"이		
<u>라 한다)</u> 이 발급하는		
청구인의 <u>대표자 증명</u>	- <u>대표자증명서는 별지</u>	
<u>서는 별지 제2호서식</u> 에	제3호서식	
따른다.		
② 의장이 법 제6조제2	②	② (개정안과 같음)
항에 따라 <u>대표자 증명</u>	<u>대표자증</u>	
<u>서</u> 발급 사실을 공표하	명서	
는 경우에는 다음 각		
호의 사항을 포함하여		
야 한다.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1. ~ 4.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대표자는 법 제12조	③ (개정안과 같음)
	<u>및 이 조례 제11조의2</u>	
	에 따른 주민조례청구	
	의 수리・각하 결정전	
	까지 의장에게 서면으	
	로 별지 제4호서식에	
	따른 주민조례청구의	
	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.	
	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	
	인 경우에는 제4조제2	
	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	
	따른 공동대표자용 서	
	식을 제출하여야 한다.	
제6조(서명요청권의 위임	제6조(서명요청권의 위임	제6조(서명요청권의 위임
신고서 등) 법 제7조제	신고서 등)	신고서 등) (개정안과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2항에 따른 대표자의		같음)
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		
는 별지 제3호서식에	별지 제5호서식	
따르고, 서명요청권 위		
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	<u>별지 제6호서식</u> -	
<u>서식</u> 에 따른다.	<u>.</u>	
제7조(청구인명부) 법 제	제7조(청구인명부) <u>①</u>	제7조(청구인명부) ① (개
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		정안과 같음)
는 <u>별지 제5호서식</u> 에	- <u>별지 제7호서식</u>	
따른다.		
<u><신 설></u>	② 대표자는 청부인명	② <u>청구인명부</u>
	부를 읍·면·동 별로 구	<u>를 자치구 동</u>
	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	
	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	
	표지를 부착하여 제출	
	하여야 한다.	
제10조(이의신청) ① 법	제10조(이의신청) ①	제10조(이의신청) ① (개
제11조제2항에 따라 청		정안과 같음)
구인명부의 서명에 이		
의를 신청하려는 경우		
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	별지 제8호서식	
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		
제출해야 한다.	<u>.</u>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1조의2(청구의 수리	제11조의2(청구의 수리
	<u>및 각하) ① 의장은 다</u>	및 각하) ① [~] ⑥ (개정
	음 각 호의 어느 하나	안과 같음)

에 케다뉜노 거ㅇ그 니	
에 해당하는 경우로서	
법 제4조, 법 제5조 및	
법 제10조제1항(법 제1	
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	
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	
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	
에는 주민조례청구를	
수리하고, 요건에 적합	
하지 아니한 경우에는	
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	
여야 한다. 이 경우 수	
리 또는 각하 사실을	
대표자에게 알려야 한	
<u>다.</u>	
<u>1. 법 제11조제2항(같은</u>	
조 제5항에 따라 준	
용되는 경우를 포함	
하며, 이하 같다)에	
따른 이의신청이 없	
<u>는 경우</u>	
2. 법 제11조제2항에 따	
라 제기된 모든 이의	
신청에 대하여 같은	
조 제3항(같은 조 제	
5항에 따라 준용되는	
경우를 포함한다)에	
따른 결정이 끝난 경	
호	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② 의장은 다음 각 호	
	의 구분에 따른 기간	
	이내에 제1항에 따라	
	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	
	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	
	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	
	<u>는 경우 : 법 제10조</u>	
	제2항에 따른 열람기	
	<u>간이 끝난 날(법 제1</u>	
	1조제5항에 따라 준	
	용되는 경우에는 보	
	정된 청구인명부에	
	대한 열람기간이 끝	
	난 날)부터 3개월 이	
	<u> 내</u>	
	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	
	는 경우 : 모든 이의	
	신청에 대하여 법 제	
	<u>11</u> 조제3항에 따른 심	
	<u>사·결정이 끝난 날</u>	
	(법 제11조제5항에	
	따라 준용되는 경우	
	에는 보정된 청구인	
	명부의 서명에 제기	
	된 모든 이의신청에	
	대한 심사·결정이 끝	
	<u>난 날)부터 3개월 이</u>	
	<u> 내</u>	

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		
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		
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		
<u>주어야 한다.</u>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		
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		
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		
<u> </u>		
따른 서명수에 명백하		
게 미달하는 경우에는		
법 제11조에 따른 서명		
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		
청과 제3항에 따른 의		
견제출 절차를 생략하		
고 각하할 수 있다.		
⑤ 의장은 청구인명부		
의 유효한 서명이 제3		
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		
이상으로 확인된 경우		
나머지 청구인명부의		
서명확인을 보류하고		
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		
를 결정할 수 있다.		
⑥ 의장은 「지방자치		
법」 제76조제1항에도		
불구하고 이 조 제1항		
에 따라 주민조례청구		
를 수리한 날부터 30일		
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		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	
	<u>여야 한다.</u>	
제12조(사무협조) 의장은	제12조(사무협조)	제12조(사무협조) (개정
법 제14조에 따라 청구	주민조례발안 관련	안과 같음)
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		
무를 원활하게 수행하		
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		
다음 각 호의 사무에		
대해 시장에게 협조를		
요청할 수 있다. 이 경	,	
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		
특별한 사유가 없으면		
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		
<u><신 설></u>	<u>1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</u>	1. (개정안과 같음)
	<u>청구권자 확인 사무</u>	
<u>1</u> .・ <u>2</u> . (생 략)	<u>2</u> .・ <u>3</u> . (현행 제1호 및	(개정안과 같음)
	제2호와 같음)	
<u><신 설></u>	<u>4.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</u>	<u>4. 제2조제1항에 따른 교</u>
	<u>따른 교육·홍보·지원 등</u>	<u>육·홍보·지원 등 사무</u>
	<u> </u>	

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2조의 제목 "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"을 "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(이하 "청구권자"라 한다)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"주민조례청구"라 한다)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, 참여·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·교육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한다)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"를 "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.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(이하 "선정대표자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
- 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"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"을 "의장"으로, "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"을 "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표자 증명서"를 "대표자증명서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· 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 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 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 중 "별지 제3호서식"을 "별지 제5호서식"으로, "별지 제4호서식"을 "별지 제6호서식"으로 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별지 제5호서식"을 "별지 제7호서식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자치구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별지 제6호서식"을 "별지 제8호서식"으로 한다.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,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(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,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한다.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법 제11조제2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같다)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

- 2.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
-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
- 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- 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-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.
- 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⑥ 의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"

을 "주민조례발안 관련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
- 4.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・홍보・지원 등 사무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■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1호서식]

주민조례청구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
	성명		생년월일	<u> </u>	
청구인의 대표자	주소	(전화번	년호 :)	
· 대표자 	[]	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(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 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	3년이 지난 외국
청구조례명	청구조례명 조례의 []제정 []개정 []폐지 청구				
주요내용	0				
청구이유					
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※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.					
		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 포함,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)는		[] 이용신청 안함	
→ 대표자 전화번호 []공개 [] 비공개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					
01N = 111N	71126X			▶ 대표자 상세주소 []공개 []비공개	
「주민조례발안에 대표자증명서의 발급		_	이 주민조례	l를 청구하며, 같은 법 제6조	조제1항에 따라
※ 대표자가 톡	수인 경우	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대표자	서식을 추가	제출하여야 합니다.	
				년	월 일
위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			(서명 또는 인)		
서울-	특별시:	의회의장 귀하			
첨부서류 위 청	!구조례안 -	및 청구권자 확인서류(주민등	록증 등)		수수료 없음
-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	부족하면 9	유의시 R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			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■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2호서식]

공동대표자용 []청구·[]철회·[]선정대표자 지정 서식

청구조례명	조례의 []제정 []개정 []폐지 청구
	0
주요내용	0
	o

청구인의 대표자

번호	성 명	생년월일	주 소 (거소·체류지)	전화번호	서명 또는 날인	비고
						선정 대표
						선정 대표
						선정 대표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[]청구, []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

작성방법

- "번호"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.
- "성명"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.
- "주소"란에는 상세주소(동번호, 호수 또는 층수)까지 작성합니다.
- "서명 또는 날인"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■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3호서식]

	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	
성 명	생년월일	
주 소 (거소·체류지)	(전화번호 :)	
청구조례명	조례의 []제정 []개정 []폐지 청구	
서명요청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제외기간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)	
위 사람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직인		

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■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4호서식]

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기	KF .		처리기간	
	성명			생년월일		
신청인 (대표자)	주소					
				(전화번호	<u> </u>)
청구조례명 조례의 [제정 []개정	[]폐지 청구	
	조례청구/ 출일자	너	년	월	일	
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. ※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			
					년	월 일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					서명 또는 인)	
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						
첨부서류	선무서듀 그 대표사증별서(주인사가 있는 경우 주인사증별서 포함)				수수료 없음	
유의사항						
-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.						

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■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5호서식]

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		처리	기간	
청구조례명				조례의	[]제정	[]개정	[]폐지 청	!구	
	성명					생년월 ⁽	일		
대표자	주소(거소ㆍ체	류지)			(전화번호	<u>:</u> :)		
	성명		(서명 또-	는 날인)		생년월 ⁰	일		
	주소(거소ㆍ체	[류지)			(전	화번호 :)	
	기간	년	월 일부터	· 년	월	일까지			
수임자	성명		(서명 또	는 날인)		생년월일	길		
	주소(거소ㆍ체	류지)			(전화번호	:)		
	기간	년	월 일부E	† 년	월	일까지			
「주민조례! 음을 신고합니다.	발안에 관한 [법률」 지	세7조제2항에	따라 우	와 같이	대표자의	서명요청권을	을 수임자에게	위임하였
								년 1	월 일
			신고인(대표자)				(서명	! 또는 인)
	서울특별시의	의회의징	· 귀	하					
				유의사형	ļ S				
청구조례명란에는 :	조례의 명칭을 작	성합니다.							

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■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6호서식]

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												
청구명				조리	ᅨ의	[]제	정 []개정 []폐지	청구		
	성 명				Ý	생년월 일	<u> </u>					
대표자	주 소 (거소· 체류지)									(전화번	호 :)
	성 명				Ą	생년월 일	<u> </u>					
	주 소 (거소· 체류지)									(전화번	호 :)
수임자	기 간			년	월	일부	-터	년	월	일까지	4	
1 6.1	성 명				Ą	생년월 일	빌					
	주 소 (거소· 체류지)									(전화번	호 :)
	기 간	년	월	일부터		년	월	일까기	4			
		관한 법률 자는 서명요					같이	대표자기	ㅏ 서명 <u>요</u>	요청권을	위임한	사실을
			서울특	·별시의	.] 회 9	의장	Z	디인	년	월	일	

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.

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■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7호서식]

(청구인명부의 표지)

) 조례의 []제정 []개정 []폐지 청구

청구인명부

청 구 사 유:

(

서 명 기 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(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)

○○시 ○○자치구 ○○동(총○○권 중 제○권)

서명 주민 수 : 명

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(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 서명부 활용요청 포함)합니다.

 청구인의 대표자
 (서명 또는 날인)

 대표자의 수임자
 (서명 또는 날인)

작성방법

- · "괄호()"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.
- · "청구사유"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.
- · 청구인명부는 시·군·자치구 또는 읍·면·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.
- ·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청구인명부

청구조례명		조례의 []제정[]	개정 []폐지 청구
주요내용	0 0		
서명을 요청한 사람	[]대표자 (성명 []수임자 (성명)	(서명 또는 날인) (서명 또는 날인)

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.

※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·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야 합니다.

번호	성 명	생년월일	주 소 (거소·체류지)	서명 또는 날인	서명일	비고

작성방법

- 1. "번호"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.
- 2. "성명"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.
- 3. "주소"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.
- 4. "서명 또는 날인"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.
- 5.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, "비고"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.

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■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8호서식]

이의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		처리기간			
	성명 생년월일						
신청인	주소(거소・	체류지)					
			(전화번	J호 :)
이의대상	([]제정 []개정 []폐지 청구의) 조례의 청구인명부				
신청 취지							
신청 사유							
「주민조례빌	발안에 관현	·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	의를 신청합니				
		신청인		Ļ		월	일
		건경단			(서	명 또는	인)
서울 특 별시	의회의장	귀하					

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,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 절차가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- 제3조(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)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에 대하여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

혂 행

개 정 안

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 ①
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
다)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
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
따른 청구권자(이하 "청구권자"라
한다)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
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"주민
조례청구"라 한다)할 수 있도록 주
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・교
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
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
한다.

② (생 략)

제4조(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 저구서 등)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서(이하 "청구서"라 한다)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)
①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(이하 "청구권자"라 한다)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"주민조례청구"라 한다)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, 참여·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·교육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	청
구서 등) ①	- — —
<u>한다)</u>	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
	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
	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. 대표
	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
	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
	표자(이하 "선정대표자"라 한다)를
	지정할 수 있으며, 서울특별시의회
	의장(이하"의장"이라 한다)은 선
	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
	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
	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
	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
	<u>할 수 있다.</u>
제5조(대표자증명서 발급 등) ① 법	제5조(대표자증명서 발급 등) ①
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	의장
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이	
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	<u>대표자증명서는</u>
<u>는 별지 제2호서식</u> 에 따른다.	<u>별지 제3호서식</u>
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	2
<u>대표자 증명서</u> 발급 사실을 공표	<u> 대표자증명서</u>
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	
을 포함하여야 한다.	

현 행	개 정 안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·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.
제6조(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)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<u>별지 제</u> <u>3호서식</u> 에 따르고, 서명요청권 위 임신고증은 <u>별지 제4호서식</u> 에 따 른다.	제6조(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)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<u>별지 제</u> 5호서식에 따르고, 서명요청권 위 임신고증은 <u>별지 제6호서식</u> 에 따 른다.
제7조(청구인명부)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<u>별지 제5호서식</u> 에 따른다. <u><신 설></u>	제7조(청구인명부) ① 별지 제7호서식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자치구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 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혂 했

제10조(이의신청) ① 법 제11조제2 제10조(이의신청) ① -----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개 정 아

----- 별지 제8 호서식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,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(법 제11 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)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 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,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 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1. 법 제11조제2항(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하며, 이하 같다)에 따른 이의신 청이 없는 경우
- 2.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

현 행	개 정 안
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	
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	
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	
따라야 한다.	
<u><신 설></u>	1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
	확인 사무
<u>1</u> .· <u>2</u> . (생 략)	<u>2</u> .・ <u>3</u> 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
	<u></u> 이
<u><신 설></u>	4.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·홍보·지원
	등 시무